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DS495) 상소심 결정의 의미와 향후과제

A Study on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Court in the Japanese Imported Food under the WTO Dispute

김성주

Kim, Sung Joo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Attorney at Law, Law offices of DUKSU.

1. 서론

WTO 상소기구는 2019. 4. 11., 한국 정부가 일본 8개 주요 현에서 생산되는 28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 및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검출시 추가적으로 17개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한 조치에 대하여 WTO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번 판정으로 인하여 WTO 패널(제1심) 판정이 잘못된 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검역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이번 분쟁의 제1심 진행 과정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식품 자체의 오염 여부에 대한 과학적 근거 뿐 아니라, 식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생태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식품의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이번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분쟁(DS495)의 패널(제1심) 판정 및 WTO 상소기구(제2심) 판정 내용을 비교 · 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WTO 상소기구가 패널 판정을 파기한 경위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시된 판정 기준의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추가 분쟁의 가능성을 포함한 전망과 과제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2. WTO 분쟁 경과

가.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일본 정부의 WTO 제소

한국정부는 2013. 9. 9.경 일본 8개 주요 현(치바, 이바라기, 군마, 도치기, 후쿠시마, 이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현)에서 생산되는 28종의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

* Correspondence to:
Attorney at Law, Law offices of DUKSU.
7th FL. 442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82-2-567-5177 Fax:+82-2-567-5173 M: +82-10-8621-5613 E: socialjoys@iduksu.com

고,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하며,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을 강화(370→100Bq[1] /kg)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 5. 21.경, 한국의 위 조치 중 ① 8개현 28종[2] 수산물의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조치가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제소하였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위 조치에 대하여 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핵심 요지는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차별성 조항(SPS 협정 제2.3조[3])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는데, 즉 한국의 조치가 일본산 제품만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 둘째로 무역제한성 조항(SPS 협정 제5.6조[4])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검사 요구 등의 조치가 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셋째로 투명성 조항(SPS 협정 제7조[5] 및 부속서2)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정부의 합리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및 관련 문서의 제공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절차 조항(SPS 협정 제8조[6] 및 부속서3), 즉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등이 검사절차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로서 위

1) Bq은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2) 전복, 알라스카 명태, 날개 · 눈 · 참 · 가 · 황다랑어, 금눈돔, 멸치, 청새리 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참굴, 꽁치, 가리비, 망치고등어, 고등어, 청 · 황새치, 밤나무 · 참 · 대문어

3)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do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Members where identical or similar conditions prevail, including between their own territory and that of other Member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hall not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3.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4) 6.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2 of Article 3, when establishing or maintaining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to achieve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Members shall ensure that such measures are not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to achieve their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3
(remark 3.) For purposes of paragraph 6 of Article 5, a measure is not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unless there is another measure, reasonably available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that achieves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nd is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o trade.
6. 제3조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 또는 유지하는 때에는 회원국은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동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Re.3)
(주석 3.) 제5조 제6항의 목적상,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적은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동 조치는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조치가 아니다.

5) Members shall notify changes in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nd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B.
회원국은 부속서2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Members shall observe the provisions of Annex C in the operation of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 including national systems for approving the use of additives or for establishing tolerances for contaminants in foods, beverages or feedstuffs, and otherwise ensure that their proced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회원국은 식품,음료 또는 사료의 첨가제 사용승인 또는 오염물질 허용치 설정에 관한 국내제도를 포함한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부속서3의 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자기나라의 절차가 이 협정의 규정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협정 제8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나. WTO 패널(제1심)의 판정

WTO 패널(제1심) 일본의 위 주장 중 검사절차 조항(협정 제8조)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조치가 WTO SPS 협정에 위반(불합치)된다고 판정하였다.

WTO 패널은 우선 차별성 조항(SPS 협정 제2.3조) 위반여부에 대하여,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무역제한성 조항(SPS 협정 제5.6조) 위반여부의 경우, 세슘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을 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투명성 조항(SPS 협정 제7조 및 부속서 2) 위반여부의 경우, 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다만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 제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다. 한국정부의 상소 및 WTO 상소기구의 판정

이에 한국 정부는 2018. 4. 9.경 위 WTO 패널 판정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2018. 12. 3.~4.경 구두심리 회의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2019. 4. 11.경 상소심의 판정보고서가 WTO 회원국에 회람되고 대외 공개되었다.

상소심 결과는 제1심 패널 판정과 달랐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 정부가 제기한 위 4개 쟁점(차별성 · 무역제한성 · 투명성 · 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 판정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차별성 조항(SPS 협정 제2.3조)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일본을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즉 유사 조건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나라의 영토적 조건(territorial conditions)도 비슷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제1심 패널은 단순히 일본산 수산물과 다른 나라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비슷하다는 기준만 제시하고 다른 기준들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생산되는 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무역제한성 조항(SPS 협정 제5.6조)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적정한 보호수준(ALOP,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① 보통의 자연환경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수준, ②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최대로 낮은 수준, ③ 연간 방사능 노출이 1mSv[7]/year 이하의 수준) 중 정량적 기준인 위 ③ 기준만 검토하고 나머지 정성적 기준(①, ②)에 대하여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본의 주장을 채택하는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제1심 패널은 한국 정부의 본 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SPS 협정 제5.7조[8])의 요건[9]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일본 정부가 위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패널이 스스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월권이며 잘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7) Sv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영향을 각각 나타내는 단위이며, Sv는 Bq에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상소심 판정의 의미

한국 정부의 수산물 금지 조치와 이에 따른 이 사건 WTO 분쟁은, 국제규범으로서의 '자유무역'과 한 국가의 검역주권 및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충돌[10] 되었을 때, 국제사회가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WTO는 본질적으로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국제규범에 따라 창설된 국제기구다. 때문에 WTO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에 반하는 수입 금지조치의 경우, 예외적이고도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인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WTO의 식품위생(SPS) 협정은 WTO 회원국이 검역주권 등을 이유로 한 수입규제조치를 할 경우 그 행사요건 및 당해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PS 협정은 WTO 회원국의 건강과 안전 관련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과학적 근거(scientific evidence)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11]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규제조치에 대하여 조치 당사국의 충분한 과학적 입증행위 없이는 해당 조치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의 생명과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과연 과학적 기술 또는 지식만으로 그 정책의 정당성과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느냐다. 가령 이번 사건과 같이 방사능 오염 여부가 문제되는 식품을 수입하게 될 때에, 해당 식품의 방사능 오염 수치만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비단 과학 뿐 아니라 윤리 · 사회 · 경제 · 문화 · 법 · 행정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문제[12]임에도 불구하고, WTO의 SPS 협정에 따라 수입규제조치의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13] 할 경우 사실상 어떠한 수입규제조치도 SPS 협정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번 분쟁의 경우에도 SPS 협정의 과학적 증거주의 및 과학적 매커니즘이 주요 판단기준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패소가 예견된 상황이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었던 것도 사실이다.

1심의 판단 기준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대상 '식품 자

8) In case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a Member may provisionally adopt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the basis of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including that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from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pplied by other Members. In such circumstances, Members shall seek to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necessary for a more objective assessment of risk and review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accordingl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 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9) ① 충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잠정조치일 것, ② 조치 시 획득 가능한 자료에 근거할 것, ③ 조치 후 객관적 위험 평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할 것, ④ 합리적 기간 내에 재검토될 것

10) 강민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법적 검토, SPS 협정의 합치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3권 제4호, 2013년). 276쪽 참조.

11) SPS 협정에 따르면 1)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이에 대한 조치가 SPS 협정의 규정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며(SPS 협정 제2조 제1항), 2)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3)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SPS 협정 제15조 제1항).

12) 강민지 위 논문 276~277쪽 참조.

13) 이윤정, "WTO SPS 협정과 과학주의: 그 한계와 문제점들", 국제법논총(제54권 3호, 2009년). 273~274쪽 참조.

체'가 방사능 오염 때문에 위험한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세슘 수치가 100Bq/kg보다 낮게 검출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기준(CODEX)에 따른 연간 방사능 노출 기준[14]에도 부합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사 없이 수입 자체를 막는 행위가 협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전 · 현직 외교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은 일본의 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의 판정은 달랐다. 상소기구는 수입금지 대상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로 대변되는 오염의 '과학적 근거'만 놓고 SPS 협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입금지 대상 식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생태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즉 식품 자체의 섭취를 통한 방사능 노출 뿐 아니라, 자연 상태에 존재하면서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방사능 요소에 대한 고려, 수입 금지조치를 행한 국가의 인접 환경 등 영토적 조건(territorial conditions)도 고려하여 SPS 협정 위배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최인접국으로서 방사능 오염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해당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능 노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 이번 수입금지조치는 존중되어야 하고, 한국 정부의 기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격하다고 하여 이를 일본 정부에 대한 차별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번 상소심 판정은 '방사능 오염'이라는 새로운 국제적 위협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이라는 국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국가의 검역주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 향후 전망과 과제

WTO의 이번 상소심 판정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추가 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보다 이번 상소심 판정에서는 향후 일본이 SPS 협정의 잠정조치 조항(SPS 협정 제5.7조)에 대하여 추가 제소를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이번 상소심 판정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잠정조치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위 잠정조치 조항에 대하여 패널이 자체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잠정조치 조항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별도의 쟁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잠정조치조항의 요건을 보면, 표면상으로는 그 적법성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15]. 잠정조치가 가능하려면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야 하고, 조치 시 획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며, 조치 후에는 객관적 위험 평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합리적 기간 내 잠정조치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번 분쟁의 제1심 패널도 일부 수입금지 품목에 대하여는 과학적 증거와 정보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이후 잠정조치를 적법하게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결국 일본 측의 추가제소 가능성을 포함하여, 새로운 분쟁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위 상소심 판정 효력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에 수입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이제는 WTO의 분쟁해결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16].

14) 1mSv(밀리시버트)/년

15) 최혜선,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대한 WTO 패널 리포트 검토」(서울법학 제26권 제2호, 2018년), 586쪽 참조.

16) 연합뉴스 2019. 5. 9.자 「후쿠시마 패소 日, WTO개혁안 내놔.."기존 판정 선례 안돼" 억지」 기사 참조.

본래 'WTO 개혁'은 미국 정부가 주도해온 담론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WTO 탈퇴가능성을 언급하면서까지 WTO의 분쟁해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7]. 미국이 제기한 WTO의 문제점 중 하나는 WTO 상소 기구의 과거 판례가 향후 판결에 인용된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은 미국이 WTO 규범들을 비판하면서 무역보복조치들을 단행할 때 WTO 규범을 준수하자고 주장하였던 나라였으나, 이제는 입장을 바꾸어 본 건 상소심 판정이 향후 판정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미국, 일본 그리고 EU까지 가세하여 WTO 분쟁해결체제가 바뀔 경우, 일본 정부가 다시 본 건과 같은 제소를 시도하여 판정을 번복시킬 가능성도 남아 있다[18]. 한국 정부도 WTO의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검역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상소심 승소가 우리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해 2018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3만4천904톤으로 58.5% 가량 감소하였으나, 일본산 가오리는 1천509톤으로 250배, 방어는 1천570톤으로 100배 이상 수입이 급증[19] 하였다. 또한 최근 대형마트에서 후쿠시마산 라면이 등장하는 등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여러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향후 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검역주권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17) KORTA 해외시장뉴스 2018. 11.30.자「 WTO 개혁 논의 수면 위로… 국제통상질서 재편 속 우리의 플레이북은?」 기사 참조.

18) 전기신문 2019. 4. 30.자「(성한경 교수의 등촌광장) WTO 수산 분쟁의 승리와 과제」 기사 참조.

19) 경인일보, 2019. 4. 15.자「WTO 역전승과 향후 과제」 기사 참조.